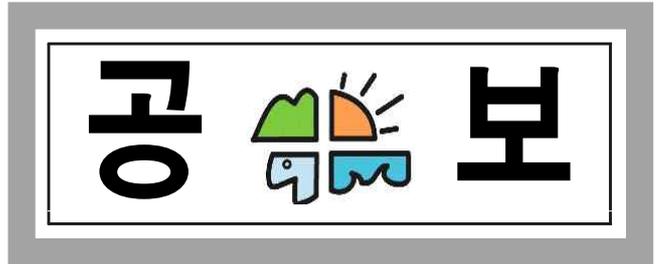


속 초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| | |
|---|---------|
| 선 | 기 관 의 장 |
| 람 | |



제1024호 2016년 11월 2일(수)

공 고

- 속초시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7
- 속초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

발행 : 기 획 감 사 실 (전화 : 639-2223, FAX : 639-2106)

속초시 공고 제2016 - 738호

「속초시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 규칙」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6년 11월 1일

속 초 시 장

속초시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지원대상을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하여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, 법제처의 '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'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일괄 정비코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제5조제1호에 따른 수혜대상자를 “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 「국가보훈기본법」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, 희귀난치성 질환자.”로 규정

나.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,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구성비율에 관하여는, “ 「속초시 양성평등 기본

조례」 제20조를 준용한다.”로 개정.

다. 제11조 중 「속초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」
을 “ 「속초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 ”로 개정.

4. 자치법규안 : 붙임

5. 의견제출

가.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6. 11. 20일 까지
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(참조: 주민생활지원실)에게 제출하
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(찬·반대 여부와 그 사유)
- 의견제출자의 성명 (법인·단체의 경우 법인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
전화번호

나.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

- 주소 : 우)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/ 속초시청 주민생활지원실(장애인복지담당)
- 연락처 : 033-639-2586 (FAX 033-639-2380)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서면, 전화, FAX, 직접방문 등

6. 기타

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주민생활지원실 장애인복지담당(033-639-2586)
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속초시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속초시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 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, 희귀난치성 질환자.

제5조제2호를 삭제한다.

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,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구성비율에 관하여는 「속초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」 제20조를 준용한다.

제9조제3항 본문 중 “3회에 한하여”를 “세 차례만”으로, “당연직”을 “공무원인”으로 한다.

제11조 중 “「속초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」”을 “「속초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|
| <p>제5조(지원대상) 시장은 2급 이상의 신장장애인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혈액 및 복막투석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1. <u>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, 국가보훈대상자,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.</u> 다만, 혈액 및 복막투석비 의료급여를 수급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.</p> <p>2. <u>그 밖에 시장이 신장장애인으로 혈액 및 복막투석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</u></p> | <p>제5조(지원대상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「<u>국민기초생활 보장법</u>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 「<u>국가보훈기본법</u>」에 따른 <u>국가보훈대상자, 희귀난치성 질환자</u> . ----- -----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삭 제></u></p> |
| <p>제9조(구성 및 운영) ① (생략)</p> <p>② <u>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위촉하고, 당연직 위원은 주민생활지원실장, 보건소장으로 한다.</u></p> | <p>제9조(구성 및 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,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구성비율에 관하여는 「속초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」 제20조를</u></p> |

관계 법령 발췌

□ 장애인복지법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,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·교육·직업재활·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, 장애인의 자립생활·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9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,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,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,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,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속초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속초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」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6년 11월 1일

속 초 시 장

1. 자치법규명 : 속초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개정이유

속초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법령에 근거없이 주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제12조제2항에서 소유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규정을 “비품 및 집기 중 수탁자 소유의 재산을 제외하고는 속초시에 귀속된다”로 하고,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(다만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)

나.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구성 비율에 관하여는 “ 「속초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」 제20조를 준용하고”로 한다.

다. 「속초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」을 “「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”로 개정.

4. 자치법규안 : 붙임

5. 의견제출

가.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6. 11. 20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(참조: 주민생활지원실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-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(찬·반대 여부와 그 사유)
- 의견제출자의 성명 (법인·단체의 경우 법인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나.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

- 주소 : 우)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/ 속초시청 주민생활지원실(장애인복지담당)
- 연락처 : 033-639-2586 (FAX 033-639-2380)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서면, 전화, FAX, 직접방문 등

6. 기타

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주민생활지원실 장애인복지담당(033-639-2586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속초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속초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2항 중 “비품 및 집기 등은 모두 속초시에 귀속된다”를 “비품 및 집기 중 수탁자 소유의 재산을 제외하고는 속초시에 귀속된다”로 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4조제1항 중 “구성하되”를 “구성하되,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구성 비율에 관하여는 「속초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」 제20조를 준용하고”로 한다.

제16조 중 “「속초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」”를 “「속초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|
| <p>제12조(위탁의 해지) ① (생략)</p> <p>② 위탁이 해지된 경우에는 센터 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, 장비, 비품 및 집기 등은 모두 속초시에 귀속된다.<단서 신설></p> <p>제14조(구성 및 운영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</p> <p>② ~ ⑤ (생략)</p> <p>제16조(수당 등)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속초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」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 | <p>제12조(위탁의 해지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, <u>비품 및 집기 중 수탁자 소유의 재산을 제외하고는 속초시에 귀속된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</p> <p>제14조(구성 및 운영) ① ----- ----- ----- <u>구성하</u> <u>되,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구성 비율에 관하여는 「속초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」 제20조를 준용하고,</u>-----.</p> <p>②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6조(수당 등) ----- ----- <u>「속초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</u>----- -----.</p> |

관계 법령 발췌

□ 장애인복지법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,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·교육·직업재활·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, 장애인의 자립생활·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9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,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,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,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,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